

서울특별시농산물잔류농약검사및이에따른손실보상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농산물잔류농약검사및이에따른손실보상등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“서울특별시농산물잔류농약검사및이에따른손실보상등에관한조례”를 “서울특별시 농산물 잔류농약검사 및 손실보상 등에 관한 조례”로 한다.

제2조제3호중 “식품위생법에서 규정한”을 “「식품위생법」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고시하는”으로 하고, 동조제4호중 “식품위생법에서 규정한 “농산물 중 농약잔류허용기준””을 “「식품위생법」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고시하는 “농산물의 농약 잔류허용기준””으로 하며, 동조제5호중 “식품위생법 제4조제2호에서 규정한 판매·유통·운반”을 “판매·유통·운반”으로 한다.

제3조의 제목 “(간이속성검사)”를 “(간이속성검사 등)”으로 한다.

제6조제2항을 삭제한다.

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“각 호의 1”을 “각 호의 어느 하나”로 한다.

제9조의 제목 및 제1항중 “서울특별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”를 각각 “서울특별시농수산물공사”로 한다.

제4조제1항 및 제5조중 “식품위생법”을 각각 “「식품위생법」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(다음 페이지에 계속)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<u>서울특별시농산물잔류농약검사및이에 따른손실보상등에관한조례</u></p>	<p><u>서울특별시 농산물 잔류농약검사 및 손실보상 등에 관한 조례</u></p>
<p>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</p> <p>1. ~ 2. (생 략)</p> <p>3. 정밀검사 : <u>식품위생법에서 규정한 "농약잔류시험법"</u>에 따라 농약잔류허용기준 이하까지의 농약을 정밀하게 분석하는 검사를 말한다.</p> <p>4. 부적합농산물 : 정밀검사 결과 <u>식품위생법에서 규정한 "농산물 중 농약잔류허용기준"</u>을 초과하여 농약이 검출된 농산물을 말한다.</p> <p>5. 유통중지 : 간이속성검사에서 양성반응으로 판정된 농산물에 대하여 정밀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<u>식품위생법 제4조제2호에서 규정한 판매·유통·운반</u> 등 일체의 거래를 중지하도록 함을 말한다.</p>	<p>제2조(정의)-----</p> <p>-----,</p> <p>1. ~ 2. (현행과 같음)</p> <p>3. ----- : <u>"식품위생법"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고시하는</u>-----</p> <p>-----</p> <p>4. -----<u>"식품위생법"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고시하는 "농산물의 농약 잔류허용기준"</u>-----</p> <p>-----</p> <p>5. -----</p> <p>-----<u>판매·유통·운반</u>-----</p> <p>-----,</p>
<p>제3조(<u>간이속성검사</u>) ①~② (생 략)</p>	<p>제3조(<u>간이속성검사 등</u>) ①~②(현행과 같음)</p>
<p>제6조(손실보상 등) ① (생 략)</p> <p>②<u>정밀검사 결과 "부적합" 판정으로 폐기되는 농산물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규칙이 정하는 바에</u></p>	<p>제6조(손실보상 등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<삭 제></p>

<p><u>따라 운송비, 상·하차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.</u></p> <p>③ (생략)</p>	<p>③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8조(보상금의 환수) ①시장은 보상금을 지급받은 자가 다음 <u>각 호의 1</u>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.</p> <p>1. ~ 2. (생략)</p> <p>② (생략)</p>	<p>제8조(보상금의 환수) ①----- -----<u>각 호의 어느 하나</u>----- -----, 1. ~ 2. (현행과 같음) ②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9조(<u>서울특별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</u>의 간이속성검사 등) ①시장은 <u>서울특별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</u> 사장(이하 “공사사장”이라 한다)에게 가락동 도매시장 내에 반입·유통되는 농산물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간이속성검사, 유통중지, 손실보상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.</p> <p>② (생략)</p>	<p>제9조(<u>서울특별시농수산물공사의</u> 간이속성검사 등) ①----- --<u>서울특별시농수산물공사</u>----- -----, ② (현행과 같음)</p>